

03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정책적 제언¹⁾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팀장



1. 들어가며 : 선거보도심의 제도의 특성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은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규정된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매체별로(방송·신문·인터넷) 유관기구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97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설치되었다. 이는 1995년 지역민영방송의 도입과 종합유선방송 개시 등 방송시장의 확대에 따라 방송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이승선, 2012, p.31). 선거방송심의위 사례는 이후 신문의 선거기사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조의3, 2000년 개정,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와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8조의5, 2004년 개정, 중앙선관위에 설치)로 이어지며, 매체별 선거보도심의기구 3분할 체제가 만들어졌다. 매체별로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기구를 두도록 한 선거법의 일관된 개정은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확대 및 선거와 관련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제도이다. 선거보도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후보자의 피해는 일반보도와 달리 신속히 구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의기구의 제도적 타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매체별 선거보도심의기구의 목표는 공히 선거와 관계된 보도의 공정성 유지이지만, 실제 심의업무의 방향은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선거와 관련한 방송콘텐츠 전반²⁾을 심의대상으로 하는 반면,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주로 기사(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³⁾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정정보도 등 필요한 조치⁴⁾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형식과 종류 그리고 조치 방법의 차이는 선거보도 공정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심의제도 운영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겠지만, 선거방송 심의가 방송의 영향력을 근거로, 정당·후보자의 방송 노출과 관련한 균형성 및 공정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보도의 객관성 등과 관련한 저널리즘의 규범적 측면

1)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중앙선관위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 없음을 밝혀둔다.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사, 교양, 오락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방송 콘텐츠에 대해 심의한다.

3) 1.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3. 주의 또는 경고 4.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4) 선거기사심의위의 조치는 1.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2. 경고 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가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도 대동소이하다.



의 심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선거방송심의위의 경우 방송사를 규율한다는, 그리고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경우 주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제도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이 호기심 어린 시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거보도심의제도를 바라보고는 있지만,⁵⁾ 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심의기구들은 선거보도에 대한 사후적 심의와 통상 권고, 주의, 경고와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각성 혹은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심의기구들이 설치된 이래로 선거보도심의제도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에 대해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심의기구들을 통해 공정성 차원의 규제를 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완(2006)은 선거방송심의제도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고 선거방송심의위가 모든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방식은 비효율성, 태생적 불공정성, 언론자유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매체를 담당·관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선거법의 태

5) 대표적으로 일본은 최근 가짜뉴스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로 선거법상 선거보도심의제도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한다.

도인데,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 심의를 중앙선관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동일한 선거법 내에서도 입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박선영, 2004). 그 밖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나 언론 자유의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선거방송심의위의 설치 이래로 20년이 넘게 유지되었다.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구들이 선거제도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선거보도심의제도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불공정보도의 유형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혹은 왜곡·과장·비방성 보도이다.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보도라고 판단되면 후보자는 먼저 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의 금지)⁶⁾,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⁷⁾, 제251조(후보자 비방죄)⁸⁾ 등과 관련하여 언론사 대표 혹은 해당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⁹⁾ 이 방법은 강력한 것으로 보이나, 선거가 다 끝난 이후에나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당장 해당 보도가 선거의 당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후보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당·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허위·비방보도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해당 조항이 언론사 보도에 직접 적용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이에 반해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애매모호한 왜곡·과장보도 등에 대해 신속한 심의·조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¹⁰⁾ 등은 불공정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¹¹⁾에 각 심의기구가 ‘지체 없이’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심의위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통한 후보자의 피해구제라는 목표는 공유된다. 피해구

6)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7)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9) 관할 선관위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사 보도는 명백히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의기구로 이첩된다.

10) 공직선거법 제8조의2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다.(선거법 제8조의2제2항)



제는 사실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보도, 후보자의 입장 전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론보도, 그리고 기타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반드시 언론사의 소명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언론사의 보도가 문제없다면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선거기간 내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이다.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방향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불공정보도 심의·조치에서 정당·후보자들의 시정요구에 따른 심의·조치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¹²⁾ 예를 들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설립 초기인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건수가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제18대 국선에서는 11건, 2012년 제19대 국선에서는 15건으로 늘어나더니 2016년 제20대 국선에서는 7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¹³⁾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SNS 매체 활용이 확산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서 흑색선전에 이르거나 홍보성 선거보도를 만들고, 후보자 등은 SNS를 통해 이를 확산·유

12) 3개 선거보도심의기구 모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심의 건은 그 숫자는 많지만 매우 정형화된 유형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이나 후보자 간 현저한 양적 형평성, 질적 공정성, 특정기간 내 방송 출연 금지와 같이 심의의 명확성이 높은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13)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건수는 각하, 기각 및 언론사와 협의에 의한 정정, 수정 등을 제외한 숫자이다.

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매체 간 융합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상호 연계되면서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각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발견하기 힘들었던 불공정 보도에 대해 후보자들의 인지와 시정요구가 늘어났다. 따라서 선거보도심의위의 심의 방향이 모니터링을 통한 일방적 규제에서 시정요구와 관련된 갈등 조정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선거보도 심의제도와 관련한 선거법의 개정안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심의기구 상설화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선거보도 관련 4개 기구가 합동 회의를 진행 중이다.



2. 선거보도(방송) 심의기준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도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규정하기 힘든 개념이다. 공정성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측정척도도 달라져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공유되는 체계도 없다. 통상 공정 보도는 “편들지 않는 보도”이고, “편향 보도란 편드는 보도”(이민용 등, 2004, p.23)와 같이 간단히 정의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틀에 박힌 설명이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김옥조, 2001, p.201),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보도로 단순사실보도보다 사건에 대한 해설과 사안의 본질을 밝혀냄으로써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효성, 2002) 등처럼 보다 복잡하게

정의되기도 한다. 학술적 정의도 다양하거나와 보도의 공정성이 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개념인가에 관한 논란도 여전하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심의위원회는 공히 심의규정을 만들어 공표하고 있다.

〈표1〉 선거방송·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규정 요약

	선거방송 심의기준	선거기사 심의기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공정성 형평성	제5조(공정성), 제6조(형평성) • 프로그램 배열과 내용 구성의 불균형 • 정당·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형평에 위배되는 불균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 정당·후보자의 정견/공약/주장 등에 대한 일방적 지지 • 감정·편견이 개입된 표현(지지/반대) • 편집·배열의 확대/과장/누락/축소/왜곡 • 칼럼·대담·토론 보도의 불균형	제3조(공정성) • 정당·후보자의 정견/공약/주장 등에 대한 계속적·반복적·일방적 지지 • 감정·편견이 개입된 표현(지지/반대) • 특정 보도의 지속 배치 •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부각 • 칼럼·대담·토론 보도의 불균형
객관성	제8조(객관성), 제12조(사실보도),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 선거와 관련된 관점과 견해의 불균형 • 중요한 사실의 과장·부각·축소·은폐 • 선거결과에 대한 예단 •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 • 의견과 사실의 분리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 중요한 사실의 과장·부각·축소·은폐 • 허위사실 및 비방 •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 예단 • 보도제목의 과장 및 왜곡 • 의견과 사실의 분리	제4조(객관성) • 중요한 사실의 과장·부각·축소·은폐 • 허위사실 및 비방 •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 예단 • 보도제목의 과장 및 왜곡
정치적 중립성	제4조(정치적 중립성) • 특정 정당·후보자의 주장 등에 대한 지지 및 옹호	제7조(정치적 중립성) • 특정 정당·후보자의 이념이나 공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비방	
기타	• 여론조사보도(오차범위/전제조건 오류/내용 누락) • 음향, 화면구성, 조영 등의 불균형 • 특집기획/사정보/연예오락프로그램 등에서의 후보자 및 정당 내용의 질적/양적 불균형 • 정당·후보자에 대한 협찬이나 선거입박기간의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 여론조사보도(오차범위/전제조건 오류) • 인터뷰, 인용, 사진 등의 질적/양적 불균형 • 선거입박기간의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 후보자의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게재	• 여론조사보도(오차범위/전제조건 오류) • 인터뷰, 인용, 사진, 동영상 등의 질적/양적 불균형 • 선거입박기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게재

3개 심의위의 심의기준은 선거보도의 양적·질적인 형평, 균형과 연관된 공정성, 허위·왜곡·과장 등과 연관된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틀로 하고, 보도 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하고 있는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3개 심의위의 심의기준은 유사하나 세부사항에서 매체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 중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규정하고 있는 식이다.

선거보도 심의기준들은 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규정이지만, 미디어와 관련된 일부 선거법 조항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각 심의위원회는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선거법의 관련 조문들을 차용·유추하여 심의기준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금지) 제2항¹⁴⁾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사진 등을 위법한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을 막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홍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각 심의위원회의 일부 심의기준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선거방송심의위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21조(후보자의 출연 방송제한 등)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⁵⁾.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의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특집 기획기사·칼럼 기고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¹⁶⁾하고 있다. 이러한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들은 선거법 제93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심의기준들도 관련 선거법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조항을 유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법보다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진 심의기준도 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 시 함께 보도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¹⁷⁾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제2항¹⁸⁾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해당 선거법의 운용주체라 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¹⁹⁾에서 요구하는 방송 시 제시해야 하는 공표요건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표요건이 보다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언론사의 여론조사 인용보도

14)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에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5) 이 규정은 과거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후보자 출연을 허용하면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1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경우 동일한 조항이 있었으나, 위원결정이 내려지며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17)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이후 생략)

18) ②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19)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며,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와 관련된 선거법 규정을 운용한다.

시 함께 보도하여야할 공표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규정은 이보다 5가지를 더 많게 요구하고 있다.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심의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언론에 대해 과잉제한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표2〉 선거여론조사 인용보도 시 공표요건 비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 조사의뢰자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2. 조사기관 · 단체명
3. 조사일시	3. 조사대상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 조사일시
	5. 조사방법
	6. 표본오차
	7. 질문내용
	8. 응답률
	9.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도 애초에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에 관한 선거법 규정을 관리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설치된 마당에 선거방송심의위가 여론조사 공표기준을 통해 방송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²⁰⁾ 과거에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선거법 제108조를 직접 적용하여 조치문 등에 명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명백한 월권에 해당한다. 윤성옥(2008)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이 언론에 대한 과잉제한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각 선거보도심의기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심의규정과 그 적용이 지닌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심의위가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 명료화하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과거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심의기준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기사”와 같이 구체화·명료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선거보도 공정성을 심의하는 잣대가 되는 심의기준은 심의제도 운영의 근간이다. 각 위원회가 심의기준을 구체화시키고 명료하게 하려는 노력은 매체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5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설치를 전후로 선거법에 직접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대표성 확보나 공표·보도 등과 관련된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선거여론조사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만 남겨두었다.



3. 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 관련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선거보도심의제도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은 6~7건 정도 되는데, 이 중 4건이 심의기구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중 1건은 심의위원의 정당추천과, 나머지 3건은 위원의 결격 및 제척 등과 관련된 법안이었다. 심의기구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쟁점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 정수에 관한 문제

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다. 3개 심의위원회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조계,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매체별로 방송사, 언론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표3〉 3개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구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정수	9명 이내	9명 이내	11인 이내
위원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학계, 대한변협,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협,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심의기구별 위원 정수는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위원정수가 11인 이내인 반면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는 9명 이내로 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점과 상설기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의위원이 비상근이고 심의활동이 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위원의 수가 많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심의위원의 결정에 의해 심의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의와 결정의 대표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와 같이 위원정수를 늘려 11인 이내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심의위원 위·해촉 등의 문제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방송 등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선거법 개정안(2017. 8)을 발의했다. 심의위원 위촉의 결격 사유를 정당의 당원인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외 결격사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 자질과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기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관련 규칙에 심의위원 위촉 시 비당원확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는 추천단체의 대표성, 전문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²¹⁾

선거방송심의위는 심의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심의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나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 해촉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에 더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할 경우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촉 사유로

2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3항, 제4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 등) 제3항, 제4항

(표4) 3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규정

구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촉사항	추천단체의 대표성, 전문성, 결격사유 유무 확인	본인승낙서,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 감안, 결격사유 유무 등 확인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제출
해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에 가입한 때 • 국회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에 가입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시 • 국회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직무수행에 공정성·중립성 현저히 저해 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국회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4조제1항 해당 시

‘정치에 관여한 때’와 ‘직무 수행에 공정성·중립성을 현저히 저해 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²²⁾ 이 규정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실제적 실효성을 갖기도 한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 중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정당 당원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창당에 관여한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사례도 있다. 선거보도심의제도에서 심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적이므로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 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해당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거보도 심의위원 위촉의 성격상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위원이 심의위원회 간 견적을 하면서 심의에 과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김성수 의원이 제시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선거방송·선거기사 심의기구의 설치 주체라 할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개별법에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어, 이를 준용하거나 각 위원회의 규칙에 수정하여 반영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거나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5) 언론중재법·방송통신심의의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

구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의 설치 및 운영 법률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 교육공무원 제외)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관, 교육공무원 제외)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해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미경과한 사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분에서 3년 미경과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한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각 위원회가 심의 안전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2017. 4. 25.)을 발의했다. 심의 안전과 관련 있는 특정 단체 출신이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심의에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해 심의의 불공정성이 우려됨으로, 각 위원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의위원 중 언론계나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심의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원 제척과 관련된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도 선거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3 정당추천 위원의 배제 문제

선거보도심의기구(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개 심의위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다. 보도의 공정성에 관해 심의하는 기구의 위원 구성에 정당 추천 위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각 정당이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진로, 2019). 그러나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당추천 위원들을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보도심의제도의 특수한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62년 3·15 부정선거의 불행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선거관리의 주요 방향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2004년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유지되었던 점만 보더라도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 부정을 막고자 하는 데 선거법의 주요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법은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의 핵심 당사자인 정당의 참여와 감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266개 시·도(17개) 및 구·시·군(249개) 선관위 및 각종 산하 위원회²³⁾에 정당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3개 선거보도심의기구도 다르지 않다.

23) 예를 들어 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기구에서 정당추천 위원의 배제와 관련된 주장은 그 특성이 일반적인 방송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와의 비교에서 생기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 위원들의 수가 많아 정치적·정파적 공정성에 대한 심의로 경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제도에서 정당추천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게다가 선거보도심의제도의 실제적 역할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의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있다. 선거보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주요 심의는 정당·후보자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격상 후보자에 대한 허위·왜곡보도, 과장·편파보도 여부 등이 심의의 주요 쟁점이 된다. 이러한 선거보도심의제도의 특성은 정당추천 위원들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심의를 할 여지가 적은 구조이다. 게다가 특정 정당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모두가 위원을 추천한다. 그 수도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위원 수에 비해 현저히 작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선거보도심의제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오히려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당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려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2017. 6. 7)을 발의하기도 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은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안과 관련하여서는 소수정당의 위원을 추천하여 거대정당에 편향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정당추천 위원 비중을 늘리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 비해 정당 측의 의견이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4.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의 상설화

현행 선거법은 3개 선거보도심의기구 중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상설로,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언론중재위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입법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997년 선거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선거방송심의위의 경우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거 시기에만 특별히 집



중해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신속히 심의·처리하고자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의 입법목적상 굳이 상설화된 기구로 만들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의 경우도 유사하다. 설치 당시 이미 언론에 의한, 특히 신문에 의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었으므로, 선거방송심의위의 선례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다만 2004년 만들어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당시 매체법 어디에도 인터넷언론사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았고, 그 범위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다.²⁴⁾ 따라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사이버 선거범죄와 연관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중앙선관위에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의 상설화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2019. 5. 31)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방송심의위 및 선거기사심의위를 상설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한 방송, 기사에 대한 심의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정요구 주체에 정당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선거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이의신청 주체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뿐만 아니라 정당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

24) 2004년 도입된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정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였으며, 이는 최초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법적 정의였다.



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는 후보자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각 정당은 선거 시기 미디어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선거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조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불공정선거보도 중 정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고 심지어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정당이 선거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에 정당을 시정요구 주체로 포함하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의 상설화 필요성은 이 기구들의 설치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제기된다. 대선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일 전 240일, 국선의 경우는 120일, 지방선거의 경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구들의 설치는 길게는 9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 정도로 들쭉날쭉하다. 게다가 통상 1년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재·보궐선거(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에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은 틀림없다. 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빈번하게 설치해야 하는 이러한 구조는 위원회 간 심의위원 중복위촉, 심의 경험의 단절로 인한 전문성과 안정성 결여, 위원의 사명감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의 상설화는 심의제도에서 필수적이라 할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선거방송·선거기사심의위의 상설화는 매체별 선거보도심의기구의 통합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매체별 심의기구 3분할 체제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구가 해당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심의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언론 및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비효율과 비경제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최진호·이재진, 2016, p.10). 또한 방송·신문 등에 보도된 기사 등 대부분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도됨으로 동일 기사에 대한 이중심의와 조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동일 기사에 대해 상이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위원회의 공신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심의기구 통합과 관련된 주장은 매체 간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먼저 선거기사·선거방송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차후에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과 상설화 전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 매체 변화에 따른 심의기구의 대응

'돈은 막고, 입은 풀다'는 선거관리의 대원칙이 만들어진지 오래이지만,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여전하다. 그러나 허위보도·논평 금지, 허위사실 공표, 비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 등 미디어와 관련된 선거법 규제조항들은 사실상 언론보도에 직접 적용되기 힘들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서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에게 미디어는 갈수록 중요한 선거운동의 방편이다. 언론의 선거보도는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은 그렇게 느낀다. 대부분이 정파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언론이 선거를 매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불행히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참여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명확히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무력하거나 실효적이지 못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언론에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하는 선언

25) 3개 심의위 통합관련 논의는 최진호·이재진 (2016). 선거보도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언론과 법>, 15-2, pp.11-12. 및 이용성 (2019). 공정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용방안(언론중재위 정책토론회), pp. 38-41. 참조.



적 규정에 불과했던 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매체별 선거보도심의기구를 탄생시켰다.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선거와 관련한 언론의 부당함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지적하는 제도이다.

선거보도심의제도는 1997년 선거방송심의기구가 만들어지고 2004년 이후 매체별 3분할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간 각 심의기구들은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구체화해왔다. 그러나 매체별 선거보도심의기구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매체의 융합, 보도와 보도가 아닌 영역의 구분, SNS 매체와 저널리즘의 혼재 그리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등 심의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김옥조 (2001). <미디어 윤리>. 서울: 중앙 M&B.
- 2) 이승선 (2012).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언론중재>, 통권123호.
- 3) 이용성 (2019, 12). <공정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용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
- 4) 이진로 (2019, 9). <선거방송보도 심의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연속토론회(3차) '지역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개선방안'.
- 5) 이효성 (2002).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2호.
- 6) 윤성욱 (2008). 국내선거방송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5호, pp.170-209.
- 7) 문재완 (2006).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pp.65-93.
- 8) 박선영 (2004). <정치관계법과 인터넷매체>. 세미나 '인터넷언론과 법적쟁점'.
- 9) 이민웅 등 (2004).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분석>.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 10) 최진호·이재진 (2016).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언론과 법>, 제15권 제2호.